

2020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2. 10.

강 원 도 지 사

I 채용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분	채용분야	채용 계급	채용예정인원(명)				시험과목
			총계	남	여	양성	
계			450	397	52	1	
공개 경쟁 채용	소방	소방사	322	302	20	-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 총론, 사회, 과학, 수학
	구급경력	소방사	20	10	10	-	
경력 경쟁 채용	구급관련학과	소방사	30	15	15	-	
	구조일반	소방사	10	10	-	-	
	구조수난	소방사	3	3	-	-	-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화학분야)는 영어 (그 외 분야)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 영어 등으로 함
	의무소방전역	소방사	15	15	-	-	
	화학	소방교	1	1	-	-	
	예방	소방사	3	3	-	-	
	정보통신	소방사	3	3	-	-	
	차량정비	소방사	3	3	-	-	
	소방관련학과	소방사	37	30	7	-	- 필수(3)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법무	소방경	1	-	-	1	필기시험 면제(신체검사+서류전형+면접시험)
항공운항관제	소방교	2	2	-	-	별도 시행공고(소방청 채용일정 연계)	

☑ 공개경쟁 채용시험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붙임 8】**

-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산출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2, 별표7'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점수

필기시험과목 및 조정점수제 변경예고

-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및 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9-108호
- 적용시험 : 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행시기 : 2022년부터 적용
-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前)	변경 후(後)
필기시험 과목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 필수(5)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조정점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와 [별표 7]에 따라 선택과목특점의 조정점수 산출함	(삭제)

II 시험일정

시험명	시 험 일 정				
	구 분	일정공고	시 험 일	합격자 발표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원서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2. 18.(화) ~ 2. 20.(목) 09:00 ~ 21:00 / 3일간 [최소기한 : 2. 21.(금) ~ 25.(화) 09:00 ~ 21:00 / 5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3. 13.(금)	3. 28.(토)	4. 28.(화)
	2차시험	체력시험	4. 28.(화)	5. 12.(화) ~ 5. 15.(금)	5. 19.(화)
		도핑테스트			별도공고
	3차시험	신체검사	5. 19.(화)	5. 19.(화) ~ 5. 22.(금)	6. 12.(금)
	4차시험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5. 27.(수) ~ 5. 29.(금)
5차시험	면접시험	6. 12.(금)	6. 17.(수) ~ 6. 26.(금)	7. 2.(목)	

- 법무분야는 '20. 5. 19.(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시험안내
- 응시인원, 기상상황 및 서류심사 기간 등의 사정에 의해 일정변경 가능
-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 '인사채용'란 (<http://local.gosi.go.kr>)에 별도 공고 및 공지
- 필기시험 성적 확인은 응시자 본인에 한하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별도안내

※ 매 단계별 시험 공고문 참조

III 응시자격

1 응시자격 등 기준일

채용구분	종류	기준일(보유 등)
공통	응시 결격사유 등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거주지 제한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운전면허	최초시험예정일(필기시험일)
	가산특전(취업지원, 의사상자 등)	최초시험예정일 전일(필기시험일 전일)
공개경쟁채용	가산특전(자격증 또는 면허증)	최초시험예정일 전일(필기시험일 전일)
	응시연령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2020년)
경력경쟁채용	응시연령	시험요구일이 속한 연도(2020년)
	경력요건의 자격·면허	최초시험예정일(필기시험일)
	경력요건의 경력(근무)기간 산정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인정학과 기간 산정	최초시험예정일(필기시험일)
※ 최종합격자 발표일 까지 응시요건으로서의 운전면허·자격보유의 효력이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 응시자격은 박탈되고 합격결정을 취소 함 ※ 모든 자격(면허)는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		

2 응시 결격사유 등 【붙임 1】

○ 다음 각 호의 관계법규에 따라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항(경력경력채용등의 요건 등)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기타 관련법령 등

3 응시연령

채용구분	계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소방사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9. 1. 1. ~ 2002. 12. 31.
경력경쟁채용	소방사·소방교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9. 1. 1. ~ 2000. 12. 31.
	소방경(법무)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9. 1. 1. ~ 1997. 12. 31.

<응시상한 연령 연장>

- ※ 다음 관계법령의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의 자도 포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
 -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근무를 마친 사람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4 신체조건

- 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붙임 2】
- 불합격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붙임 3】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의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 의한 다음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신체검사) 별표 3의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 준용

5 거주지제한

채용구분	거주지 요건
공개경쟁 채용	※ 다음의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1. 2020년 1월 1일 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기준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에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거나, 2. 2020년 1월 1일 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강원도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36개월) 이상인 사람
경력경쟁 채용	거주지 제한 없음 (단, 구급관련학과, 소방관련학과, 정보통신은 거주지 제한 있음)

- ※ ① 행정구역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의 시·도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②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응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초본)를 기준 ③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상기 요건과 같고 ‘국내거소 신고’로 거주 사실 증명

6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 운전면허(공통) - '법무분야'는 제외

채용구분	응시자격
공개경쟁채용	도로교통법 제80조 의거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소지
경력경쟁채용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및 경력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구급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구조사(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 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를 근무(4대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업무 :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응급처치 및 이송업무 - 간호업무 : 상병자나 임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 근무 -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 근무 경력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 -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 근무 경력 -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 근무 경력 -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구급대원 대체인력, 의무소방원, 사회복지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 근무 경력(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 - 군 의무병 복무 경력(군 경력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 복무확인서)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응급의료 관련부서 근무 경력
구급 관련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구조학과, 간호학과, 의학과나 그 밖에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응급 구조사(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구조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특수전 부대 근무경력자 중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부대 : 육군 특전사, 해군 특수전여단(UDT), 공군 공정통제사(CCT) - 특수임무대 :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 특수수색대, 공군 항공구조사, 국회사 24특임대대, 헌병 특수임무대, 수방사 35특공대대 - 기타 특수전 부대 : 국방부 발급 '경력증명서 1부' 와 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구조대 또는 안전관리반 근무경력(4대 보험적용)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평사원(계약직 포함, 수습견습인턴 등 제외)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p>※ 상기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p>
구조수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군해난구조대(SSU) 심해잠수사 특수훈련을 수료한 후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잠수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4대보험 적용 사업장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p>※ 상기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p>
의무소방 전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소방원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한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만기전역예정일이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과 · 응용화학과 · 화학공학과 · 정밀공업화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유사학과 범위 : 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화학분야 전공과목이 1/2이상인 경우에 유사한 학과로 인정) [붙임 22]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소방, 가스, 전기, 건축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4대 보험적용 사업장 근무)이 있는 사람 				
	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			
	기술사	소방, 가스,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기능장	가스, 전기, 건축일반시공			
	기사	가스, 전기, 전기공사, 건축, 건축설비, 소방설비(전기, 기계)			
산업기사	가스, 전기, 전기공사, 건축,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정보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의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4대 보험적용 사업장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	정보처리, 정보보안,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차량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동차정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4대 보험적용 사업장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분야 경력) 아래 ①, ②번 중 1개 사항만 충족하면 가능 - ① 소방차량(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굴절 및 고가사다리차 등) 및 특장소방차량의 제조 또는 정비업체 - ② 자동차 종합정비업(자동차 정기검사관련 업무 제외) * 법 개정 전 1급 공업사 				
소방 관련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 · 소방안전공학과 · 소방방재학과 · 소방행정학과 ·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 · 소방안전공학과 · 소방방재학과 · 소방행정학과 · 소방안전관리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붙임 22] 				
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수료)하거나, 「변호사시험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 (해당분야) 근무경력이라 함은 자격(면허)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 근무를 위해 채용 또는 보직을 부여받고 실제 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임
(단, 휴직, 직위해제, 병가 등의 기간은 산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III 원서접수

■ 기 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 방 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장소)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응시수수료) 소방경 7,000원 / 소방사·소방교 5,000원
 - ※ 응시수수료 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등) 소요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시점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하고, 증빙서류 확인 과정을 거쳐 응시수수료 반환
- (응시원서 접수용 사진파일) 원서접수시점 이전 6월 이내 촬영,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천연색(JPG, GIF, PNG, BMP)으로, 규격은 반명함(가로 3cm * 세로 4cm)·해상도 100dpi 이상 사진사용
- (가산점 기입·등록) 필기시험 전일까지, 응시자가 직접 인터넷 접수 사이트(<http://local.gosi.go.kr>)에서 기입·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IV 가산특전

1 대상자 및 비율

구 분		가 산 비 율	적용시기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각 단계별 시험에서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하나만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5%	필기시험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자격증 등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면허)증, 사무관리 등 가산점은 분야별로 유리한 것 1개(서로 다른 2개 분야는 합산), 최대 5%까지 적용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3%		

2 취업지원대상자

- 각 시험단계별로 각 과목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단계별 시험마다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대상자 및 그 가족
- 가산점 적용 합격자는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해당 안 됨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및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1577-0606)·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국가보훈처장 발급) 제출

③ 의사상자 등

- 각 시험단계별로 각 과목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단계별 시험마다 각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가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사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 가산점 적용 합격자는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해당 안 됨
-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의사상자 해당여부 및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044-202-3258) 또는 관할 시,군,구청(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확인, 의사상자 증명서 제출

④ 자격증 등 소지자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채용시험의 특전)·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채용시험의 특전)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는 필기시험 때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만점의 5%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산
- 자격(면허)증·사무관리 2개분야로 나누어 가산점 적용, 각 분야별로 유리한 하나에 대해 가산점 적용(단,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 가산대상 자격(면허)증·사무관리 종류 및 가산점 비율 **【붙임 23】**

분야	비율	5%	3%	1%
자격 (면허)증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1급-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잠수기능장 의사, 변호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소방안전교육사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분야 자격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IV 시험방법 및 절차

1 필기시험(법무분야 제외)

- 시험시간 : 10:00 ~ 11:40(공개경쟁) / 10:00 ~ 11:00(경력경쟁)
- 배점 등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선택형
- 시험과목 : 5과목(공개경쟁) / 3과목(경력경쟁)

채용구분		시험과목
공개경쟁채용		- 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 선택(2)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 총론, 사회, 과학, 수학
경력 경쟁 채용	소방관련학과	- 필수(3)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그외 소방교	-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사	- 필수(3) : 국어, 영어(생활영어), 소방학개론

○ 시험범위

과목	적용분야	출제범위	비고
생활영어	경력경쟁채용 (소방사)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소방 관계법규	공개경쟁채용	◦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경력경쟁채용	◦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방학개론	공통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붙임 6]
사회	공개경쟁채용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개정교과명 반영
과학	공개경쟁채용	물리학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학	공개경쟁채용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수학	미적분 I 제외

※ 2020년부터 수학, 사회, 과학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 적용

○ 문제 이의제기 신청

- 필기시험문제 및 (가)답안 공개 : 3. 28.(토) 16:00
 - 장소 : 중앙소방학교 119고시(<http://119gosi.kr>) 홈페이지
 - 내용 : 필기시험 문제지, 가답안
- 신청기간 : 3. 28.(토) 16:00 ~ 3. 29.(일) 24:00

- 장소 : 중앙소방학교 119고시(<http://119gosi.kr>) 홈페이지
- 절차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 이의제기서 첨부
 - * 필기시험문제 이의제기서 **【붙임 7】** : 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만 가능
- 내용 : 필기시험 출제문제 관련(오류, 복수정답, 정답없음 등)
 - * 전화문의 및 기간경과 후에는 이의제기 불가

○ 합격결정

- 매 과목 40% 이상 및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시험성적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

1.5배수	2배수	3배수
소방, 소방관련학과 구조일반, 구조수난	구급경력, 구급관련학과 의무소방전역	화학, 예방 정보통신, 차량정비

- 채용분야별 합격결정 시 상기 배수표에 의해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소방관련학과(여)는 11명, 구조수난은 5명으로 합격자 결정
- 채용분야별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해당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전원 합격' 결정

② 체력시험(범무분야 제외)

○ 대상자 : 필기시험 합격자

○ 시험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붙임 9, 10】**

○ 배점 등 : 각 종목별 10점 만점, 총점 60점

○ 합격결정

- 총점 60점 중 30점(총점의 50%) 이상 득점 시 합격
- 체력시험에 합격하였어도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 판정 시,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관련법령에 의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정지 등 불이익 처분

○ 도핑테스트 **【붙임 11】**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7% 범위 무작위 선정(인원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붙임 12, 13】**

※ 도핑테스트는 단계별 시험과 별도로 시행할 수 있으며, '소방 공무원임용령' 제37조(시험의 구분 등) ③항 규정 미 적용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7조(시험의 구분 등)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 단계의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의 다음 단계의 시험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9. 1. 15.>

③ 신체검사

- 대 상 자 : 체력시험 합격자 및 법무분야 응시자
 - 검사기관 :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한 종합병원 4개소 【붙임 5】
 - 결과제출 : 대상자가 신체검사 후 결과서를 시험실시기관에 직접 제출
 - 합격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시험의 합격결정)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신체검사)에 따라 신체검사 후 '신체검사서'의 합격여부로 결정 【붙임 4】
- ※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판정 시 지정기간 내 (재)정밀검사 실시, 그 결과로 합격·불합격여부 재결정

④ 서류전형 및 인·적성검사

- 대 상 자 : 체력시험 합격자 및 법무분야 응시자
 - 방 법 : 자격, 경력 및 가산특전 등 관련서류 제출 【붙임 24】
 - 합격결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을 서류심사하여 적합한 자를 합격 【붙임 14, 15, 16】
- ※ 서류 미제출 또는 인·적성검사 불참 응시자는 응시포기로 간주하며, 제출서류 및 인·적성검사 자료는 면접시험 기초자료로 제공

⑤ 면접시험

- 대 상 자 : 신체검사·서류전형 합격자
- 평가요소 : 5개 【붙임 18】
- 방 법 : 집단면접, 개별면접
- 합격결정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시험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 득점 시 합격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C⁰, D) 평정 시 불합격

6 최종합격 결정

- 대 상 자 : 면접시험 합격자
- 시험성적의 합산 : 필기75% + 체력15% + 면접10% / 단 법무는 면접 100%
- 합격결정
 - 공채·경채 : 합산성적의 고득점자 순위로 채용예정인원
 - 경채 중 법무 :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위로 채용예정인원
- ※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계산하며,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 구급경력(남, 여)·구급관련학과(남, 여)·소방관련학과(남, 여) 경력 채용의 경우, 각 분야 최종합격자가 채용예정인원보다 미달될 경우, 그 인원만큼 동일분야 다른 성별에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시험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채용하며, 채용 시 동점자로 인해 채용예정인원이 초과하게 될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7 시험절차

- 공개경쟁채용·경력경쟁채용
 - (1차) 필기시험 → (2차) 체력시험 → (3차) 신체검사 → (4차) 서류전형(인·적성검사) → (5차) 면접시험
- 경력경쟁채용 중 법무분야
 - (1차) 신체검사 → (2차) 서류전형(인·적성검사) → (3차) 면접시험
 - ※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 시험 응시 불가하나, 시험실시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前) 단계 시험 합격결정 이전에 다음단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IV 응시자 유의사항

1 원서접수 유의사항

- 채용분야별 중복·복수 접수 불가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 귀책
- 접수기간 중 기재(입력)사항 수정·취소가능, 접수종료 후 불가
- 접수기간 내 응시수수료를 결제(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상접수처리 불가
- 접수기간 중 또는 취소기간 이내 응시철회 시 전액환불(수수료만 해당)
- 접수 후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원의 개명판결문 필히 지참하여 필기시험 응시

- 접수 시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온 사진 및 부착물(모자, 선글라스 등) 착용사진 사용금지
 - ※ 동·식물 및 연예인 사진 등 본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진등록 시 응시불가 등 불이익 처분
 - ※ 부정한 목적으로 허위 사진등록 등의 경우 향후 5년간 시험응시 제한
- 응시결격자는 원서접수 및 시험응시 불가
- 수험표는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 안내기간에 접수사이트에서 출력
- 가산점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신청 후 필기시험 전일 18:00까지 원서접수센터에 등록해야 가산점 인정.
 - ※ 특히, 1종대형운전면허 가산점 입력 시 '소방분야(가산자격증)'란에 필히 입력해야 함. 오입력 또는 미입력 시 가산점 적용 배제
- 자격요건(결격사유, 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 가산특전 증빙서류는 추후 안내하는 기간 내 제출
 - ※ 상기 사항을 위반한 허위사항 접수 시 관련법령에 의거 당해시험 정지 또는 합격취소하고 5년간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 불이익 처분

② 필기시험 유의사항

- 문제지 표지의 시험과목 순서에 맞게 답안 표기해야 하며, 시험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하거나 밀려서 표기한 경우 문제지 표지의 시험과목 순서대로 채점
 - ※ 특히, 소방관련학과 분야는 '선택과목' 마킹란에 '제3과목' 답안 작성 금지 컴퓨터가 인식하는 그대로 채점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
- 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선택하여 답안 표기한 경우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과목으로 채점(원서접수 마감이후 선택과목 변경 불가, 취소기간에도 변경 불가)
- 답안작성 시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 사용금지.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채점 전 또는 중 수정부분이 뜯겨져 나가는 경우 등)은 수험생 본인 귀책
- 수험표, 신분증 등 필히 지참 후 지정좌석에 착석하여 안내방송 및 시험감독관(관리관) 지시 이행
-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안경,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무선호출기, 이어폰,

PDA, 스마트워치 등) 휴대불가하며, 시험시작 후 발견된 경우 실제 사용 여부 관계없이 부정처리

※ 시험시작 전 필히 시험실 전면 제출, 시작 후 자진제출 또는 소지 여부 확인 시 부정행위 처리

○ 답안작성 시 다음 사항은 수험생 본인 귀책, 불이익 처리

-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본인이 가져온 연필 또는 샤프, 볼펜 등을 사용하여 예비마킹, 이중마킹, 번짐, 긁음(사선), 낙서 등으로 인한 중복판독 시 이중표기되어 답안무효처리 될 수 있음
-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 답안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마킹할 경우에는 컴퓨터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및 답안 마킹 잘못, 답안지 낙서, 훼손(타이밍마크 ■■■■) 등으로 채점불가 시 일체 정정이 불가하며 컴퓨터 인식(판독기결과 값을 기준)하는 대로 채점함

- 시험시간 관리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는 시험시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에 주의
- 문제지 배부 후 시험시작 전 문제지 열람불가, 열람 시 당해시험 무효처리
- 시험시간 중 대화 및 물품대여 불가하며 화장실 이용불가
단, 화장실 이용 시 재입실 불가, 시험종료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시험감독관(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 불응하며 계속 답안지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부정행위 처리
- 시험종료 후 시험감독관(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하며 모든 답안지(폐기 답안지 포함)는 필히 제출
- 수험표, 신분증 등에 시험관련 사항 인쇄·메모가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정지 등 불이익 처분

③ 체력시험 유의사항

- 부정합격(금지약물 복용·금지방법 사용) 방지위해 도핑테스트 실시
- 시험장 내 개인 영상촬영금지 및 수험생 외 출입금지
- 시험 중 본인 부주의로 인한 부상발생 시 수험생 본인 귀책, 그에 따른 시험 미응시 및 불합격 시 시험의 연기 또는 추가시험 불가
- 시험 중 바닥 미끄럼 주의 및 장갑, 스파이크 신발 등 보조기구 금지

- 시험관정관(관리관)의 지시 불이행 및 허가없는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 미응시 시 추가시험 불가
- 체력시험 세부운영 방법(측정방법, 실력기준 등)은 시험당일 사전교육, 수험생 부주의 등(교육 미참석)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 귀책
- 당일 시험본부의 영상촬영은 시험관정 보조자료로만 활용하며 수험생에게 비공개
 - ※ 체력시험장 입장 시 영상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 판정 시 체력시험 합격에도 당해시험 합격취소

4 신체검사 유의사항

- 모든 신체검사 소요비용은 수험생 본인 부담
- 반드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 **【붙임 4】**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및 '수기 기재된 신체검사서'는 불인정
- 신체검사서는 필히 검사를 실시한 지정병원의 압인 또는 계인처리 및 담당의사 서명(인), 지정병원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 검사전일 18:00이후 음식물 섭취금지(물 제외) 등 공복상태 유지
- 색각자는 종합병원에서의 사전 검사(아노말로스코프, 색각경검사)를 권고하며, 채용시험 응시가능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판단
 - ※ 특히, B형간염(보균자포함)· 불합격판정기준 해당자는 사전확인 요망
 - ※ (불)합격여부는 신체검사 지정병원에서 판단. 병원의 검사절차에 의함
 - ※ 색신교정렌즈 등 부정합 기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당해 시험 불합격 처리 및 부정행위자로 불이익 처분
- 서류전형 기간 내 신체검사서 미제출 시 시험 응시포기 간주

5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 채용예정인원 미달·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최종합산 성적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부정행위로 인한 합격취소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의 다음 순위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순위자'를 추가합격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 후라도 응시자격 제한·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취소(무효) 처리

6] 가산특전 관련 유의사항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자격증 등 소지자)은 발급 후 필기 시험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가산특전 종류, 가산비율, 자격번호, 보훈번호·의사상자 등 번호를 반드시 입력
- 접수 시 상기사항 오입력·미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귀책
- 취업지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 모두 해당 시 유리한 것 하나만 기입해야 하며 한 가지만 적용
- 가산점(자격증 등 소지자)은 공개경쟁채용 응시자에게만 적용
-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은 공개경쟁채용·경력경쟁채용 전부 적용

7] 경력경쟁채용 관련 유의사항【붙임 14】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사업장 근무경력만 인정
- 경력증명 관련 서류는 ①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확인서【붙임 16】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③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④ 급여계좌내역(근무당시) ⑤ 필요시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근로시간 등 명시) 및 추가서류 제출 요구
- ※ 세부사항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예정
- ※ 업체의 폐업 등으로 관련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근무경력사실확인서” 제출【붙임 15】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민원증명' (Public Inquiry) and provides information about the service. The sidebar on the right contains a '민원증명 신청' (Public Inquiry Application) section with a red circle around the '사실증명신청' (Certificate of Actual Information Application) option. The main content area also has a '민원증명 이용사항' (Public Inquiry Usage) section with a red circle around the '사실증명신청' (Certificate of Actual Information Application) option.

- 공고된 학과와 졸업한 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붙임 17, 22】
- 시험관련 모든 제반사항(제출서류·자격요건 등)에 거짓·위변조 등이 있는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행위자 처리, 기재·기입·제출 사실여부 필히 확인

8 기타 유의사항

- 본 시험의 공고는 사정에 의해 변경가능, 변경 시 시험실시일 7일 전 까지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별도공고
 - ※ 미열람·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 귀책
- 천재지변(폭우, 강풍 등) 시 예정대로 시행, 부득이한 경우 별도공고
- 응시원서(사진포함) 및 제출서류 등의 기재착오, 허위작성, 허위사진등록, 오기,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 귀책
 -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모든 응시자의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파쇄·소각처리
- 모든 단계별 시험 시 수험표, 신분증 필히 지참 후 시험시작 30분전 까지 입실(단, 필기시험은 40분전)
 - ※ 입실시간 전까지 시험장(시험실시 건물) 미입장 또는 미등록 시 응시 포기(불합격) 간주, 또한 지정일시에 시험관련 서류 등 미제출시 동일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주민등록 발급신청확인서·운전면허증·기간 만료 전 여권에 한해 인정, 학생증·자격수첩·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공무원증 등은 불인정
 - ※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 귀책
- 시험장 물품 파손·훼손 등의 경우 수험생 본인 변상, 시험장은 금연 지역으로 흡연적발 시 법적조치
- 시험 중 소지품은 본인관리, 분실 시 수험생 귀책
- 시험관련 조희기관에 응시원서·제출서류 및 자격(면허) 등 관련하여 사실여부 조회예정, 원서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수험표 분실 시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서 재출력 가능
- 각 시험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단계별 시험공고문을 통해 확인

본 공고문 및 모든 공고·안내사항은 강원도소방본부 홈페이지「인사채용」란 공지.

-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접수증 및 응시표 출력,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관련
 - 문의처 : 지방자치단체 원서접수센터 (☎ 1522-0660)
- 채용시험(필기, 체력, 신체검사,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
 - 문의처 :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채용담당자 (☎ 033-249-5104, 5114)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제외)

- 붙임
1. 응시결격 사유 등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4.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5.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6. 소방학개론의 범위
 7. 필기시험 문제 이의제기서
 8.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9.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10.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11. 도핑테스트 안내문
 12.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13.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4.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경력경쟁분야)
 15.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
 16.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확인서(경력증명서)
 17.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18.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실시기준
 19.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21. 신원조사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2. 소방분야 관련학과 인정 대학 목록
 23. 자격(면허)증 소지 가산점 비율
 24. 채용분야별 제출서류 목록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종전의 재직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함
- > 예시 : 응시자 김00이 A기관에 재직하던 중 2011년에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2년 이후 A기관을 지정고시에서 제외한 경우 경력경쟁채용의 결격사유로 판단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붙임 19】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원임 등의 제한)

-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포함한다)
 - 2. 제60조(選舉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등록의무자 :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과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동안 다음 각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다음 각 목의 법인 등 세부내용은 법률 참조
 -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정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2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참조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

→ 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 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 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 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 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계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u>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u>
13. 눈	가. <u>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u>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3] 참조

4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cm×4cm)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검 사 내 용							
신장		cm		체중		kg	
				혈압			
시력	맨눈	좌: 우:	색신 (색각)	청력	정상	좌: 우:	
	교정	좌: 우:			교정	좌: 우:	
안질환				이비인후질환			
치아				호흡기질환			
간질환				신경질환			
소화기질환				피부질환			
순환기질환				정신질환			
비뇨기질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검사				기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결과	<input type="checkbox"/> 합격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합격여부	<input type="checkbox"/> 불합격	
	<input type="checkbox"/> 판정보류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5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연번	병원명	지역	주 소	전화번호
1	강원대학교 병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효자동)	033-258-2164, 2313
2	강원도 삼척의료원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418(남양동)	033-570-7418
3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일산동)	033-741-1670, 2
4	강릉아산병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033-610-3698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 질식, 제거, 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성 명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응시분야	• 2020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질의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과목 : 000 • 문항번호 : A형 - 00번, B형 - 00번

<출제문제>

<사유 및 관련근거> - 질의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

<응시자 의견>

8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text{응시자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 \div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 \times 10 + 50$$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sqrt{\frac{(\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점수} - \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2 \text{의 총합}}{\text{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인원수} - 1}}$$

2.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 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9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종 목	측정방법 등
악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 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뺀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뺐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안 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별표 참조)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분석결과(양성)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동의서는 체력시험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 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및 직업 "기타")
- www.druginfo.co.kr
- www.kimsonline.co.kr

I 금지약물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1) 대사물질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드로스타논(drostanolone)
- ▶ 메티놀론(methenolone)
- ▶ 메타스테론(methasterone)
methasterone(17 β -hydroxy-2 α ,17 α -dimethyl-5 α -androst-3-one)
- ▶ 스타노졸롤(stanozolol)
- ▶ 1-테스토스테론(1-testosterone)
1-testosterone(17 β -hydroxy-5 α -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클렌부테롤(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hydrochlorothiazide)
- ▶ 클로로티아지드(chlorothiazide)
- ▶ 푸로세마이드(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1) 대사물질 :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 ▶ 메틸헥산아민 (methylhexaneamine, dimethylpentylamine))
- ▶ 메틸 에페드린 (methylephedrine)
- ▶ 에페드린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 부프레노르핀 (Buprenorphine)
- ▶ 덱스트로모라미드 (dextromoramide)
- ▶ 헤로인 (diamorphine, heroin)
- ▶ 펜타닐 (fentanyl) 및 유도체
- ▶ 히드로모르폰 (hydromorphone)
- ▶ 메타돈 (methadone)
- ▶ 모르핀 (morphine)
- ▶ 옥시코돈 (oxycodone)
- ▶ 옥시몰폰 (oxymorphone)
- ▶ 펜타조신 (pentazocine)
- ▶ 페티딘 (pethidine)

II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용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남
 3. 생년월일: _____ 4. 용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응급
기간(주/월) _____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 경력경쟁채용대상 응시자의 자격증대여 및 허위경력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8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제3항 제5호

-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주40시간 기준)한 경력을 말함
 - 근무경력이라 함은 단지 해당경력과 관련된 기관·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實) 근무경력을 의미. 즉, 육아휴직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공무상 병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응시요건 기간의 10%의 범위 내에서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으로 산정함(단, 대상자는 근로계약을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분실 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 (참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임금지급방법, 사회보험 적용 등이 명시되어야 함(표준근로계약서에 따름)

(가) 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상근 근무 : 3년 인정

(나) 시간제 등 비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전문가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실 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근무경력	사업체명	해산(폐업)연도	직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주)○○병원	2017	주임	95.05.01. ~ 97.12.01. (2 년 8 월)	응급구조사

입증인(1) 주소 :

성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입증인(2) 주소 :

성명 :

(서명)

근무처(직위) :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제출자와의 관계 :

연락전화번호 : 000-0000-0000

붙임 : 폐업사실 확인·증명서 등(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1부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경력증명서)

기관현황	회사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대상자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무형태
		(예시)			2010.12.25. ~2012.12.22.	상근
		(예시)			2013.01.01. ~2013.12.31.	비상근 주 20시간
		(예시)			2014.01.01. ~2014.12.05.	시간제 주 10시간
	총 근무기간					
징계사항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1(기안)	확인자 2(결재)
성 명		
서명(인)		
연락처		
팩 스		

년 월 일

_____ 사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사항을 참고하여 귀 사에 보유한 인사기록과 일치 여부를 우선 확인 후 작성
- 근무기관은 합병, 회사분할 등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에 기재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 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미만 근무자
- 확인자는 작성자가 직접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 징계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
- 소방공무원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문서 내용을 보안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0000과 (☎ **※ 검증 시 사용하는 별도 전화번호, 팩스번호 작성**) ← 필히 기입
- 주의사항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7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대학교(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2020년 강원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 ○ (전화 : -)

2020년 월 일

○○대학교(원) 총장(직인 날인)

강원도지사 귀하

I. 평가요소 등

○ 면접시험의 평가 요소 및 각 요소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인성 또는 적성검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등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II.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C⁰, D)**를 평정한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 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부정행위자가 당해 필기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2020년도 강원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강원도에서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법령상 의무이행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8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6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 제24조,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연구논문실적, 특허실적, 병역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등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기관	제공근거 및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성명, 주민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국세청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소득, 납세 사실 등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경력사항 사실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명, 근무부서명,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근무시간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대학 등 학위 발급 기관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학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학위 취득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학위명, 학위 번호, 취득일자, 전공명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자격증 발급 기관	- 임용령 제15조, 제42조, 시행규칙 제28조 - 자격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자격 취득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조회·회신 후 즉시 폐기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채용후보자 등록 및 합격자 명부 관리를 위하여 최종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채용 절차 종료 후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채용시험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채용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강원도에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020년 5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5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 (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본인			자필서명	자필서명
배우자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가 족(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인사처) ■ 주민·<u>범죄경력</u>·수사·수배 <u>조회자료</u>(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연도	대학명	학과명	대학명	학과명	대학명	학과명	대학명	학과명
2012년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대구한위대학교	소방방재환경학	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한국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대동대학교	소방학부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	한양대학	전기소방안전관리
	경북도립대학	소방방재전공	동강대학	소방안전관리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	강릉도립대학	소방환경방재과
	경산1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전남도립대학	소방안전관리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경민대학	소방행정학과	동원대학	소방안전관리	제주산업정보대학	소방환경관리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경북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북경대학교	소방안전관리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부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
	경원전문대학	소방시스템과	복성대학	소방안전관리	주성대학	소방안전관리	용인송담대학	건축소방설비과
	경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장신대학	소방방재학과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부산경상대학	소방안전관리계열 소방행정공무원 전공	충남도립청양대학	소방안전관리	봉원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계명문화대학	소방환경 안전과	부산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군장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서명대학교	소방안전관리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방성고려진흥문화산업진흥원	소방공학사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성화대학	소방안전관리	포항대학	전기소방계열	대림대학교	건축설비소방과
	대구공업대학	건축설비소방안전	세경대학	소방안전구급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서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대구보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신성대학	소방안전관리	효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해천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대구미래대학	소방행정	양산대학	소방안전관리	창원문성대학	소방방재과			
2013년	가천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대구공업대학	건축설비,소방안전	상지영서대학	소방안전과	창원전문대학	소방방재과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대구미래대학	소방행정학과	서명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청양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강릉도립대학	소방환경방재과	대구보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성화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봉원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대구한위대학교	소방방재환경학	세경대학	소방안전구급과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경민대학	소방행정학과	대동대학교	소방학부	서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충남보건과학대학교	경찰소방행정과
	경북도립대학	소방방재전공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	신성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충정대학	소방안전과
	경북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동강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양산대학	소방안전관리	방성고려진흥문화산업진흥원	소방공학사
	경산1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용인송담대학	건축소방설비과	포항대학	전기소방계열
	경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동원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경원전문대학	소방시스템학과	육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	우송대학	소방방재학과	한국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복성대학	소방안전관리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한양대학	전기소방안전관리
	계명문화대학	소방환경 안전과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부산경상대학	소방안전관리	전남도립남도대학	소방안전관리과	호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군장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부산경상대학	소방행정공무원	제주산업정보대학	소방방재학과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장신대학	소방방재학과			
2014년	세경대학교	소방안전구급과	호남대학교	소방행정과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육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대구보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학과
	강릉도립대학	소방환경방재과	장신대학	소방방재공학과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전공	부산경상대학	소방안전계열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설비소방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경북도립대학	소방방재과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동원대학교	건축소방행정학과	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경민대학교	소방행정과	해천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충남도립청양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신성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삼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경산1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순천제일대학교	소방행정과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송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창원문성대학	소방방재과
	충정대학교	소방안전과	대구한위대학교	소방방재환경학과	우송대학	소방방재학과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형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전남도립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경북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서명대학교	소방행정과	서경대학	소방안전관리과(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서명대학교	소방안전과	서경대학	소방안전관리과(야)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가천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서명대학교	소방안전과(위탁)	대구공업대학	설비소방전공	해천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호원대학교	소방행정과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대구공업대학	소방방재전공	제주국제대학	소방방재학과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제주산업정보대학	소방환경관리과		

2015년	세명대학교	소방안전구급과	호남대학교	소방행정과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학과
	강원도립대학	소방환경방재과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전공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계열
	용인승원대학교	건축설비소방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강원대학교	소방학과	동양대학교	건축소방행정학과	유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경인대학교	소방행정과	해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충남도립경양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경신1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청주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순천제일대학교	소방행정과
	조영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송실사이버대학	소방방재학과	창원문성대학	소방방재과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환경학과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청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서경대학	소방안전관리과(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공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서명대학교	소방안전과	서경대학	소방안전관리과(야)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가천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서명대학교	소방안전과(위탁)	대구공업대학교	설비소방전공	해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호원대학교	소방행정과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대구공업대학교	소방방재전공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제주산업정보대학	소방환경관리과			
2016년	용인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우송정보대	소방안전관리과	동원과학기술대	소방안전관리과	대전보건대	재난시설안전과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전공	순천제일대	소방방재과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명실사이버대	재난소방학과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호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부산과학기술대	소방안전관리과	조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	대전대학교	소방안전학과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경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서경대학교	소방안전과
	서명대학교	소방안전과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대구한의대	소방방재환경학과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유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전남도립대	소방전공학과	대전과학기술대	소방안전관리과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강원도립대	소방환경방재과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청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육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경북도립대	소방방재과	동양대학교	건축소방행정		
2017년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환경학과	서명대학교	소방행정과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서명대학교	소방안전과	창원문성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대전대학교	소방안전학과	서경대학교	소방안전과	청양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명실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세명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조영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대전보건대학교	재난건설안전과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경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동양대학교	건축소방행정학과	송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한국명실사이버대학교	재난소방학과
	명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용인승원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해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유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호남대학교	소방행정과
	공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동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육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호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018년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부	서명대학교	소방안전과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서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김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세명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간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대전보건대학교	재난건설안전과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청양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명실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주간)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경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야간)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조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경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동양대학교	건축소방행정학과	송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명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용인승원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한국명실사이버대학교	재난소방학과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동원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유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해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공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육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호남대학교	소방행정과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국가평생교육원	소방학 전공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전공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일반반, 사후맞춤형반)	서명대학교	소방행정과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소방행정학과			

2019년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대구한의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주간)	서명대학교	소방행정과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강동대학교	경찰소방과	대림대학교	건축설비소방과	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서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충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세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장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대전보건대학교	재난건설안전과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철암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건양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동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주간)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동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야간)	세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전공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추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동양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순천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충진대학교	소방안전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오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포항대학교	소방방재안전과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한국영천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우송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주간)	학천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국립경상남도립대학교	소방학전공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효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국체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전기전자계열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서명대학교	소방안전과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2020년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동경대학교	소방안전과(주간)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효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강동대학교	소방안전과	동경대학교	소방안전과(야간)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순천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소방전공)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동양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연동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과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오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방안전관리학과(주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우송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주간)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전기전자계열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국체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상지대학교	소방공학과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서명대학교	소방안전과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서명대학교	소방행정과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전공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부 소방방재환경전공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충북도립대학교	소방행정과		
	대림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과	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충원대학교	소방안전과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포항대학교	소방방재안전과		
	대전보건대학교	재난건설안전과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한국영천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 상기 명시된 '소방분야 관련학과' 이외의 학과를 졸업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은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를 필히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면허)증 소지 가산점 비율

직무분야 (26)	중직분야 (61)	기술·기능 분야(510)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14 건설 (6/98)	141 건축 (29)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거무집	
					건축목공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운수운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146 건설기계운전 (11)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플러운전 불도저운전 전장크레인 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전공기운전
			162 기계장비설비 설치 (31)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케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케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케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설비보전
					승강기	기계정비 승강기	기계정비 승강기
					농업기계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전자부품장착
						생산자동화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타워크레인설치·해체
	163 철도 (5)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동력기계정비
	164 조선 (6)			조선	조선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조선		항공	항공		
165 항공 (8)	항공기관				항공기관정비		
	항공기계				항공기계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166 자동차 (8)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차량		그린전동자동차 정밀화학				
18 화학 (2/12)	181 화공 (9)	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화학분석		
	182 위험물(3)	위험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험물	

직 무분야 (26)	중직무분야 (61)	기술-기능 분야(510)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20 전기 전자 (2/39)	201 전기 (16)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용융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광학	
	202 전자 (23)				광학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광학기기	
		산업계측제어				반도체설계	
				의공	의공		
				전자계산기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임베디드	전자		전자기기
		전자용융					
							전자카드
						3D프린터개발	
							3D프린터운용
21 정보통신 (3/31)	211 정보기술 (15)			빅데이터분석			
					사무자동화		
		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212 방송-무선 (6)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보안		
	213 통신 (10)			방송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25 안전관리 (2/42)	251 안전관리 (27)		통신설비 가스		통신선로	통신기기 통신선로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가스	가스 건설안전	가스 건설안전	가스	
		산업위생관리 소방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252 비파괴검사 (15)	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상 기상감정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26 환경에너지 (2/37)	262 에너지기상 (13)						

공통사항	분야		추가사항
① 기본증명서(본인, 상세) ※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 ② 신원진술서 ③ 신원조사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필서명 필수 ⑤ 도핑테스트 동의서 ⑥ 자기소개서 ⑦ 주민등록초본(상세) ※ 주소변동사항 및 병적사항 포함 ※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 ⑧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주민번호가 모두 나오게 발급 ⑨ 운전면허증 (복)사본 ⑩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정부24) ⑪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반드시 기재 [기타] 해당자만 ○ 군복무 중인 자 - 군 경력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전역예정일 표기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의사상자 등 대상자 - 의사상자 등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공채	소방	① 가산점 자격(면허)증 사본
	그외	① 경력증명서 [붙임 16] - 의무병, 군 경력자는 군 경력증명서 또는 군 복무확인서 ② 자격(면허)증 사본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⑤ 급여계좌내역(근무당시기간 전부) - 금융기관 발급분	
	구급 관련 학과	① 졸업증명서 ② 면허증(응급구조사 1급) 사본	
	소방 관련 학과	① 졸업자(2년제~4년제) - 졸업증명서 ※ 미졸업자(4년제) - 성적증명서, 재학(휴학·자퇴 등)증명서, 수료증명서 ② 동일계통학과 증명서(해당자만)	
	경채	화학	① 졸업증명서(대학교, 대학원 전부 해당) ② 성적증명서 ③ 동일계통학과 증명서(해당자만)
	의무 소방	① 복무확인 증명서 ※ 전역예정자는 복무확인 증명서에 필히 전역예정 명시	
	구조 일반 중 군경력	① 군 경력증명서 ※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주특기교육·훈련 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② 특수전임무수행 확인서(해당자만)	
	구조 수난 중 군경력	① 군 경력증명서 ※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심해잠수사 교육·훈련 기록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② 필요시 '심해잠수사' 교육·훈련 수료 증명	
	법무	① 사법시험합격증, 사법연수원 수료증, 변호사면허증 중 1가지	

※ 제출서류는 각 단계별 시험(체력시험, 서류전형) 일정 공고 후 발급분으로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중 다음의 서류는 체력시험 시 제출

- 기본증명서, 신원진술서, 신원조사용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도핑테스트 동의서

※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하여 상기 서류외 추가서류 제출을 요할 수 있음